



시 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762호 2026. 10. 12.(월)

고 시

-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전시품 무상 기증 공모 3

조례 · 규칙

-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9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11
- 「목포시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규칙」 14
-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18
-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30
-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38
-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40
-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45
-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51
-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57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67
-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9
-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73
-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78
-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80
-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 82
-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93
- 「목포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99
- 「목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104
-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107
-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09
-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124
-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129
-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135
-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40

-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52
-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65
-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167
-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171
- 「목포시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174

회람							
----	--	--	--	--	--	--	--

발행 : 목포시 편집 : 홍보과 ☎ 061-270-8539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전시품 무상 기증 공모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에서는 2027년 하반기 완공을 앞두고 시민과 관광객에게 목포의 기독교 역사를 소개하고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 관련 소장품을 기증 받고자 하니 뜻있는 소장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1. 수집대상【시대배경 1892년 이후】

- 호남권 선교의 시작을 알리는 1892년 미국 남장로교 개척선교 파송과 1894년 선교사의 방문부터 1897년 선교부 설치 등 호남권 선교의 시대성·직업성·지역성·문화성을 반영하는 소장품

2. 기증자격

- 가. 시민, 각 기관·단체, 기념사업회 등(지역 제한 없음)
- 나. 소유권이 명확하고 기증 의사가 분명한 경우

3. 접수기간 : 2026. 10. 12.(월) 09:00 ~ 2026. 12. 31.(목) 18:00

- ※ 신청서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18:00)에 한하며,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받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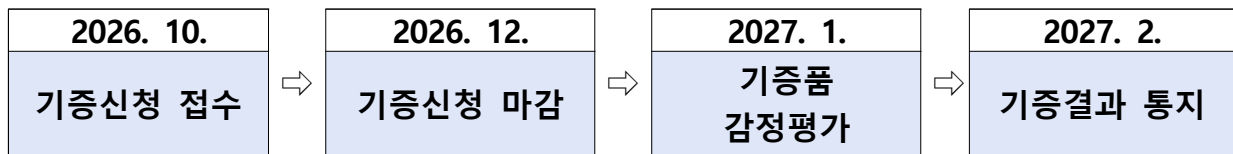
4. 접수방법 : 방문 · 우편 접수

- 가. 주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 3층 문화예술과 (우)58613
- 나. 문의 : 목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061-270-4639)
- ※ 우편 접수시 봉투에 “기독교 근대역사관 소장품 기증” 명기

5. 제출서류

- 가. 소장품 기증신청서 1부.
- 나. 소장품 자료명세서 1부.
- 다.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1부.

6. 기증 절차 ※ 세부절차와 시기는 접수 시 개별 안내



7. 유의사항

- 가.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불법으로 취득, 또는 출처가 불분명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순 시중에서 판매되는 기성품의 경우에 기증이 제한됩니다.
- 나. 목포권 기독교 근대역사관 전시에 부합되지 않거나 파손 정도가 심한 경우 접수가 제한됩니다.
- 다. 무상 기증만 가능하며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 접수가 제한됩니다.
- 라. 소장품은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결정하며 기증대상에서 제외된 소장품(실물)은 소장자에게 통보하고 반환합니다.
- 마. 기증받은 소장품은 원칙상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상속인에게 반환되지 않습니다.
- 바. 소장품 실물을 등기우편으로 접수할 시, 소장품의 파손, 분실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
- 사.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습니다.
- 아. 본 공모는 무상 기증으로 사례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 자. 기타 문의사항은 목포시 문화예술과 문화정책팀(☎061-270-4639)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서식 : 1. 소장품 기증신청서 1부.
2. 소장품 자료명세서 1부.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끝.

서식 1 소장품 기증 서약서

소장품 기증서약서

기 증 자 인적사항	주 소			연락처	
	성 명 (상호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소장품 기증 목록

연번	명칭	시 대	수 량	기증금품액	출 처

1. 위와 같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재산의 기부)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귀 기관에 소장품을 기증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소장품은 본인 소유임을 확인하며 기증 후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3. 본 기증은 무상기증으로 사례금 또는 구입대금이 지급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별첨】 소장품 기증목록 1부.

2026년 월 일

성 명 (인)

목 포 시 장 귀하

소장품 기증 목록

[illegible]

서식 2 소장품 자료 명세서

소 장 품 자 료 명 세 서			
연 번			
명 칭		수 량	
크 기		제작시기	
소장 경위			
관련 스토리 및 기증 배경			
사 진			

서식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재산의 기부)에 의거한 소장품 기증·
기탁 절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하고자 하오니
이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 및 이용기간
성명(기관·단체명)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기증·대여 제반 절차 및 전시 활동	해당 행정 문서 보유기간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제공 동의 여부

- 귀하의 개인정보는 관련문서와 함께 보관되며, 위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거부하실 경우 기증자 예우 혜택 및 유물 기증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일 일

신 청 자 :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규칙 제 1907 호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요트마리나 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1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탁운영) ① (생 략)	제8조(위탁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시설의 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 ----- ----- ---
1.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법인인 경우에는 <u>법인등기부등본</u> 1부, 법인이 아닌 단체인 경우에는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1. ----- ----- <u>법인등기사항증명서</u> -----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규칙 제 1908 호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50퍼센트”를 “30퍼센트”로 하고, 같은 호 중 “3억원”을 “4억원”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4호 중 “당해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 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하되 기업 당 2억원까지”를 “20억원을 초과한 투자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5억원까지”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 중 “토지 등의 매입비는 등기 완료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후 지원한다”를 “입지보조금은 착공 신고 시 전체 지급액의 70퍼센트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장등록 시에 지급한다”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지원기준) ① 제13조의 대상 기업에게 지원하는 내용과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투자유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지원범위와 지원액을 최종 결정한다.	제14조(지원기준) ① ----- ----- ----- ----- -----.
1. 입지보조금은 정상 분양가·매입비 또는 정상 임대료의 <u>50퍼센트</u> 범위 안에서 기업 당 <u>3억원</u> 이하로 지원할 수 있다.(임대료 지원기간은 임대계약서상의 기간으로 하되, 최대 5년 단위로 설정)	1. ----- ----- <u>30퍼</u> <u>센트</u> ----- <u>4억원</u> ----- ----- ----- -----.
2. ~ 3. (생략)	2. ~ 3. (현행과 같음)
4. 시설보조금은 <u>당해연도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의 공장시설 등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시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설비금액의 2퍼센트 범위 안에서 지원</u> 하되 기업 당 <u>2억원까지</u> 지원할 수 있다.	4. ----- <u>20억원을 초과한 투자액의 5퍼센트 범위 안에서 기업 당 5억원까지</u> ----- -----.
5. (생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 ~ 제28조 (생략)	제15조 ~ 제28조 (현행과 같음)
제29조(지원기준) ① 국내·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등의 지원 시기	제14조(지원기준) ① ----- -----

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등의 매입비는 등기 완료하고 영업활동을 시작한 후 지원한다.

2. ~ 5. (생략)

제30조 ~ 제33조 (생략)

-----.

1. 입지보조금은 착공 신고 시 전체 지급액의 70%를 선지급하고, 나머지는 공장등록 시에 지급한다.

2. ~ 5. (현행과 같음)

제30조 ~ 제33조 (현행과 같음)

「목포시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규칙 제 1909 호

목포시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운영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5조의2에 따라 설치되는 목포시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위원회는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관리국장, 관광문화교육국장, 미래전략산업국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의회가 추천하는 의원 1명

2. 공모사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기관, 비영리 민간단체 등에 소속하고, 그 소속 기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사람

3. 그 밖에 관광, 문화, 경제 등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에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③ 위촉위원은 제1항에 따른 임기가 만료된 경우에도 후임위원이 위촉될 때까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을 희망하는 경우

2. 심신장애로 직무 수행이 곤란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

4. 직무태만 또는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제6조에 따른 이해충돌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6조(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비밀유지) ① 위원은 사전검토 과정에서 알게 된 공모사업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위원은 심의가 종료된 후에도 제1항의 비밀유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사전검토 자료를 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에서만 배부하고, 회의 종료 후 필요한 경우 자료를 회수하거나 폐기하는 등 보안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

다.

② 위원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제7조에 따른 의회보고 대상사업으로 한다. 다만, 시비 부담이 없는 사업은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④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갈음할 수 있다.

제10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공모사업 총괄부서 담당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공모사업 총괄부서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목포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규칙 제 1910 호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개정규칙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영 제33조의2제1항제3호”를 “영 제35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1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절 경영분석

제114조 앞에 절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절 결산

제115조 앞의 “제7장 채권관리”를 삭제한다.

제6장제3절(제115조부터 제120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절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제115조(위원회의 설치) ① 시장은 목포시 지방공기업의 공영개발사업 회계감사를 수행할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하여 목포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영개발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도시유산과장

2. 공영개발사업 혹은 회계업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3. 시민단체 및 공영개발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7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

무를 대행한다.

제1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0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체결) ① 회계감사인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려는 회계법인 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으로부터 제안서를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선임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회계감사인으로 선임 될 수 없다.

1. 회계법인인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

2. 감사반인 경우: 그 감사반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이 「공인회계사법」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감사반

⑤ 회계감사인은 선임 당시뿐만 아니라 감사 수행 중에도 제4항에 따른 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자격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회계감사 계약을 체결한다.

제1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채권관리

제126조 앞의 “제8장 보 칙”을 삭제한다.

제126조 및 제127조를 각각 제132조 및 제133조로 하고, 제115조부터 제125조까지를 각각 제121조부터 제131조까지로 한다.

제13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장 보 칙

제132조(중전의 제126조) 중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에 의한다”를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5조부터 제120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해 회계연도에 대한 회계감사를 위하여 회계감사인을 선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별표 2]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표(제120조제3항 관련)

구분	평가항목 및 평가내용	배점	평점					비고
			A	B	C	D	E	
감사 수행 능력 (35)	① 업 력 - 법인설립일로부터 제안서 마감일까지의 업력	5	15년 이상 (5)	10년 이상 (4)	5년 이상 (3)	3년 이상 (2)	3년 미만 (1)	
	② 공인회계사 수 - 선정 해당연도 제출 마감일 기준 공인회계사 수(수습 공인회계사 제외)	5	20명 이상 (5)	15명 이상 (4)	10명 이상 (3)	5명 이상 (2)	5명 미만 (1)	
	③ 징계현황 - 최근 2년간 감독기관으로부터 받은 징계처분 사실 (법인기준)	5	0건 이하 (5)	3건 미만 (4)	6건 미만 (3)	10건 미만 (2)	10건 이상 (1)	
	④ 주요 사업실적 - 최근 2년간 공공기관 감사실적	20	10건 이상 (20)	8건 이상 (18)	6건 이상 (16)	4건 이상 (14)	4건 미만 (12)	
감사 수행 계획 (65)	⑤ 투입인원 - 감사일정 중 투입인원 수, 구성원 등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⑥ 투입시간 (1인당) - 감사일정 중 투입시간, 집중도에 대한 상대평가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⑦ 인력의 전문성 - 감사일정 중 투입인력에 대한 경력 및 경험, 자질 등을 상대평가	20	매우 적절 (20)	적절 (18)	보통 (16)	미흡 (14)	매우 미흡 (12)	
	⑧ 회계서비스 제공내용 - 회계관련 자문서비스 제공계획 평가 - 재무적 위험요소 파악 및 개선 권고 등	15	매우 적절 (15)	적절 (13)	보통 (11)	미흡 (9)	매우 미흡 (7)	
합 계		100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신 설>

②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6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영개발사업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1. 도시유산과장

2. 공영개발사업 혹은 회계업무 분야에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전문가

3. 시민단체 및 공영개발사업 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

<신 설>

<신 설>

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담당
팀장이 된다.

제117조(위원회 임기와 직무) ① 당
연직 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
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
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
레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 임기는 전임자 임
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위원이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
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촉을
해제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
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
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
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
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
다.

③ 위원회는 긴급한 사유로 회의
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
다.

<신 설>

④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해당 업체의 용역·자문·연구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2.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3. 그 밖에 심사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④ 위원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 설>

규정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120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및 계약

체결) ① 회계감사인은 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선임한다.

② 위원회는 회계감사인의 선임을 위하여 회계감사를 수행하려는 회계법인 또는 3명 이상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감사반으로부터 제안을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제출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감사인을 선임할 수 있다.

③ 위원회는 별표 2에 따른 평가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종합하여 선임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를 시장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은 회계감사인으로 선임 될 수 없다.

1. 회계법인인 경우: 「공인회계사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회계법인

2. 감사반인 경우: 그 감사반에

소속된 공인회계사 중 1명 이상
이 「공인 회계사법」 제21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관계에 있는 감사반

⑤ 회계감사인은 선임 당시뿐만
아니라 감사 수행 중에도 제4항에
따른 자격제한 사유가 발생한 경
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에게 알려
야 한다.

⑥ 시장은 제4항에 따른 자격제한
여부를 확인한 후 회계감사 계약
을 체결한다.

<신 설>

제115조 ~ 제125조 (생 략)

제8장 보 칙

<신 설>

제126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회계직공무원은 재정보증없이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할 수 없으며,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은 「목포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에 의한다.

제127조 (생 략)

제7장 채권관리

제121조 ~ 제131조 (현행 제115조
부터 제125조까지와 같음)

<삭 제>

제8장 보 칙

제132조(회계직공무원의 재정보증)

----- 「목포
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
용한다.

제133조 (현행 제127조와 같음)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26 호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3명”을 “2명”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주민”을 “주민과 지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 또는 임원”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5호) 중 “제2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2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목포시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별표에 출장의 필요성 중 심사기준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기만료 1년 이내의 출장인 경우 출장의 필요성 및 긴급성, 출장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가?

별표에 출장자의 적합성 중 심사기준란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인하여 출장 제한 사유가 있는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8조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이전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4. 임기만료 1년 이내의 출장인 경우 출장의 필요성 및 긴급성, 출장 결과의 활용 가능성 등 요건을 충족하는가?		
의정과 관련성 (국제교류, 초청 목적출장 제외)	1. 정책 연구 및 벤치마킹 목적에 부합하는 출장인가?		
	2. 방문지의 기관 면담자가 정해진 출장인가?		
	3. 해당 정책을 지역에 도입할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했거나 방문할 계획이 있는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4. 출장자 중 징계·환수 처분으로 인하여 출장 제한 사유가 있는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가?		
	3. 사적인 비용 지출 없이 공무국외출장을 수행하도록 계획하였는가?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출장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가?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공 무국외출장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민간위원과 <u>3명</u> 이하의 소속 의원으로 구성된 목포시의 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 회(이하 “심사위원회” 라 한 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u>다만, 공무국외출장의 대상자</u> <u>인 의원은 심사위원회의 위원이</u> <u>될 수 없다.</u>	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 ----- ----- <u>2명</u> ----- ----- ----- ----- - . <단서 삭제>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 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 회단체 등 외부로부터 추천을 받거나 공모 절차를 거쳐 의장 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심사위원회에 <u>주민을 포함하여</u> <u>다양하게 구성되도록</u> 하여야 하 며, 위촉위원의 성별 비율에 관 하여는 「양성평등기본법」 제 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 다.	② ----- ----- ----- ----- . ----- ----- <u>주민과 지</u> <u>역주민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u> <u>는 시민단체 1개 이상의 대표</u> <u>또는 임원</u> ----- ----- ----- ----- .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제11조(공무국외출장 제한 등)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2. (생략)

3. 특별한 사유 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생략)

5. 제2항에 따른 환수조치가 결정된 경우

<신설>

<신설>

- . <단서 삭제>

1. · 2. (현행과 같음)

<삭제>

3. (현행 제4호와 같음)

4. 제5항-----

② 의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원 임기만료 1년 이내인 경우에는 제2조제1호 내지 제4호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국외출장을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선진사례 견학 등 일반 목적의 공무국외출장의 경우에는 출장 필요성, 긴급성, 출장결과 활용가능성 등을 엄격히 검토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의 허가 검토서를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 개최 이전 누리집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무국외출장심사

<신 설>

② (생 략)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④ (생 략)

⑤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생 략)

<신 설>

위원회는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3호를 포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및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의장이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외출장을 제한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2항과 같음)

제12조(출장보고서 제출 및 심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의장은 심사위원회에서 출장결과보고서 심사결과 위법·부당한 출장으로 판단 시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안전부 등 외부 및 내부 감사기구 등에 감사 및 조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제14조(사후관리 등)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첨부)를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누리집, 지방행정종합정보공개시스템에 게재하여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신 설>

록 하여야 한다.

제16조(직원 보호 등) ① 목포시
의회 소속 직원은 공무국외출장
시 의원의 특정 여행업체 알선,
출장 강요 등 위법하거나 부당
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해당 직원에 대해
인사 및 평가 등에 불이익을 주
어서는 아니된다.

② 의원은 공무국외출장 동행
직원에 대하여 비용부담 강요,
사적 심부름, 회식 강요 등 출
장 중 공무 외 불필요한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27 호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계약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달리 계약체결 방법, 입찰 참가자격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법적 근거를 문서화하고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 (심의 · 자문사항의 사후관리) ① · ② (생략) <u><신 설></u>	제11조 (심의 · 자문사항의 사후관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시장은 제9조제3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달리 계약체결 방법, 입찰참가자격 또는 낙찰자 결정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와 법적 근거를 문서화하고 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야 한다.</u>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28 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목포시”를 “시장은 시”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제5호 중 “위원장이 인정하는”을 “위원회가 정하는”으로 한다.

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략에 관한 사항

제5조제3항제5호 중 “위원장이 인정하는”을 “위원회가 정하는”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제12조제2항 중 “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을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하

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업무 관련 분청”을 “해당 분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u>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u> <u>은 목포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u> <u>하여 20년을 단위로 하는 지속</u> <u>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기본</u> <u>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u> <u>행하여야 한다.</u>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 략) <u>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u> 3. ~ 7. (생 략)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 하는 경우에는 목포시 지속가능 발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 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 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 4. (생 략) 5. 그 밖에 기본전략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 항으로서 <u>위원장이 인정하는</u>	제4조(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① <u>시장은 시</u> ----- ----- ----- ----- ----- ----- -----. ② ----- -----. 1. (현행과 같음) <u>2.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추진전</u> <u>략에 관한 사항</u> 3. ~ 7. (현행과 같음) ③ ----- ----- ----- ----- ----- ----- ----- ----- -----. 1. ~ 4. (현행과 같음) 5. ----- ----- <u>위원회가 정하는 ---</u>

사항

④·⑤ (생략)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② (생략)

③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 단서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 4. (생략)

5. 그 밖에 추진계획의 본질적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④ (생략)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전략, 추진계획의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2. ~ 5. (생략)

② (생략)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

④·⑤ (현행과 같음)

제5조(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이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4. (현행과 같음)

5. -----

-- 위원회가 정하는 -----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 -----

--.

<삭 제>

2.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1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

치 및 기능) ①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부시장 소속으로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생략)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공동위원장은 부시장과 위원회에서 선출하는 위촉위원으로 한다.

③ 부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업무 관련 본청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 3. (생략)

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법 제2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목포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둔다.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시장과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
---.

③ -----
호선한다.

④ -----
해당 분야 -----

---.

1. ~ 3. (현행과 같음)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29 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를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로 한다.

제4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5조제1항 중 “목포시의”를 “시의”로, “참여하여 협력해야”를 “참여하여야”로,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과 실천을”을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
계획을 실천하기”로 한다.

제6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 교류 협력

제7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부시장”을 “상임의장”으로 한다.

② 공동의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호선된 공동의장은 상임의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기획, 환경, 도시건설, 공원녹지, 해양수산분야 서기관급 공무원”을 “시의 지속가능발전 업무 담당 부시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제1항 중 “상임의장, 공동의장”을 “상임의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제23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한다.

제28조 중 “지속발전 가능협의회”를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유엔환경 개발회의에서 채택된 “의제21 (Agenda 21)”과 「지속가능발 전 기본법」 및 「기후위기 대 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정신을 실현하고 목 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목포 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해 민관협력기구인 목포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설치하 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지속가능발 전 기본법」에 따라 ----- ----- ----- ----- ----- ----- -----.
제4조(시장의 책무) ①·② (생 략) ③ 시장은 협의회에서 수립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민들 에게 공표하여야 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①·② (현행 과 같음) <삭 제>
제5조(시민과 기업의 책무) ① 시 민과 기업은 지구환경을 보전하 고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한 목포시의 정책에 적극 참여하여 협력해야 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이행계획의 수립과 실천 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시민과 기업의 책무) ① -- ----- ----- 시의 ----- 참여하여 야-----, 지속가능발전목표와 이행계획을 실천하기 ----- -----.

② (생 략)

제6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계획 수립·추진 및 평가

2.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교육·홍보

3. 시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위한 조사·연구사업

4.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단체와의 교류 협력 및 연구

5. (생 략)

제7조(구성) ① (생 략)

② 공동의장은 정기총회에서 선출하며, 이중 1명을 호선하여 상임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으로 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③ 공동의장 1명은 당연직으로 부시장이 된다.

④ (생 략)

⑤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상임의장이 부득이한 사유

② (현행과 같음)

제6조(기능) -----
-----.

1.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2.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교육·홍보

3.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조사·연구

4.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국내외 기관·단체와 교류 협력

5. (현행과 같음)

제7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동의장은 시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호선된 공동의장은 상임의장이 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⑤ -----

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시장이 미리 지명한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생략)

제8조(위원의 위촉)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당연
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위
촉직 위원은 상임의장의 추천으
로 시장이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 환경,
도시건설, 공원녹지, 해양수
산분야 서기관급 공무원

2. (생략)

②·③ (생략)

④ 위촉위원 중 여성위원의 비
율은 3분의1 이상이 되도록 하
여야 한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운영위원
회는 상임의장, 공동의장, 감사,
각분과위원회 위원장 등 1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
장은 상임의장이 되며 간사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② (생략)

제21조(결산) 연도별 결산은 회계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운

-- 상임의장-----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의 위촉) ① -----

-----.

1. ----- 시의 지속가능발
전 업무 담당 부서장

2.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
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제10조(운영위원회) ① -----
--- 상임의장-----

-----.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결산) -----
----- 2개월 -----

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보
고서와 함께 회계감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기총회의 승인을 받
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경비의 지원 등) ① (생
략)

제28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추
진) 협의회는 지구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유엔등 국제기구 및 전국의 지
속발전 가능협의회 등과의 연대
협력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하
며 실정에 맞게 각종 프로그램
들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제23조(경비의 지원 등) (현행 제1
항과 같음)

제28조(국내외 연대 협력사업추
진) -----

----- 지
속가능발전협의회 -----

-----.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30 호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목포시 (이하 “시”라 한다) 시민과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시민 또는 공무원”을 “목포시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7호 및 제8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기존 업무를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안을 말한다.

5.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효율적인 성과가 있는 경우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제안을 말한다.

6.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 본문 중 “시민과”를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로 한다.

제6조 중 “시민과”를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와”로 한다.

제17조제5항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행정절차법」 제52조의2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u>목포시</u> (이하 “시”라 한다) 시민과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시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시민에 대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u>시정에</u> <u>관심이 있는 자 또는 공무원</u> ----- ----- ----- ----- ----- ----- -----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 -----.
1. “제안”이란 <u>시민 또는 공무원</u> 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 행정서비스, 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에 관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1. ----- <u>목포시 시정에</u> <u>관</u> <u>심이 있는 자(국내에 거주하는</u> <u>외국인을 포함한다)</u> 또는 <u>소속</u> <u>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u> <u>한다)</u> ----- ----- ----- -----.

가. ~ 자. (생 략)

2. · 3. (생 략)

<신 설>

<신 설>

<신 설>

4. · 5. (생 략)

제3조(제안의 종류) ① 제안은 시
민제안, 아이디어제안, 실시제
안, 공모 제안으로 구분한다.

② “시민제안”이란 시민이 시책
또는 행정전반에 관한 개선 아
이디어를 시장에게 제출하는 제
안을 말한다.

가. ~ 자. (현행과 같음)

2. · 3. (현행과 같음)

4.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
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기존 업무를 개선하
고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안을 말한다.

5.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효율적
인 성과가 있는 경우에 채택여
부를 결정하는 제안을 말한다.

6.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
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
집하는 경우에 시정에 관심이
있는 자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
는 제안을 말한다.

7. · 8.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삭 제>

③ “아이디어제안”이란 공무원이 자기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에 대한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하여 기존 업무를 개선하고 능률을 향상 시킬 수 있는 제안을 말한다.

④ “실시제안”이란 공무원이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효율적인 성과가 있는 경우에 채택여부를 결정하는 제안을 말한다.

⑤ “공모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시민 또는 공무원이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제출) 시민과 공무원은 제안서를 수시로 시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실시제안의 경우는 개선아이디어를 담당업무에 적용한 후 그 성과가 나타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시장은 시민과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

제4조(제안의 제출) 시장에 관심이 있는 자와 -----
-----.

-----.

제6조(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
---- 시장에 관심이 있는 자와 -----

나 시제품 등을 제작함에 있어서 시에 보유하고 있는 시설·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7조(상여금 지급) ① ~ ④ (생략)

⑤ 채택제안의 제안자인 시민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

제17조(상여금 지급) ① ~ 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31 호

정부부처명 변경 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목포시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등 7개 조례 일부개정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포시 먼지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를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제2조(「목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7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환경부령”을 각각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13조 중 “환경부령”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한다.

제3조(「목포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목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의 개정)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6조(「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의 개정)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에”를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로 한다.

제7조(「목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목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을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먼지 없는 도시 만들기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시장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환경부 훈령) 제4조에 따라 지정된 특별관리지역 · 공사장 · 사업장, 레미콘 제조업체 등 먼지다량 배출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먼지발생 저감을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제6조(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 ---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 업무처리규정」(기후에너지환경부 ----- ----- ----- ----- ----- ----- ----- ----- ----- 1. ~ 3. (현행과 같음)

목포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 략) 5.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 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 ----- ----- 기

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 9. (생략)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은 환경부령에 따른다.

제7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8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 3. (생략)

②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후에너지환경부령-----.

6. ~ 9. (현행과 같음)

제6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제7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제8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

1. ~ 3. (현행과 같음)

②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로
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9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다
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
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
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
록·보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 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
한다.

제10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질 관리) ① (생 략)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
고하여야 하며 공보 또는 인터
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방법, 측정결과의 제
출 · 공고시기 · 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
을 따른다.

-----.

제9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 ---

----- 기
후에너지환경부령-----

-----.

② -----

----- 기후에너지환경부
령-----
-----.

제10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
질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
관-----

-----.

③ -----

----- 기후에너
지환경부령-----
-----.

④ 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을 따른다.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검사결과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⑤ (생략)

④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제12조(보고 및 검사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③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④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개선명령) 시장은 다중이용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하는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않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제13조(개선명령) -----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목포시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생활소음·진동을 측정함에 있어서는 <u>환경부장관</u> 이 정한 소음·진동 공정시험기준에 의한다. ②·③ (생략)	제7조(생활소음·진동의 측정) ① ----- ---- <u>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u> ----- -----. ②·③ (현행과 같음)

목포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제11조(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① 법 제8조제1항에 의하여 시장은 환경부장관이 통보한 녹색제품 구매지침을 참고하여 다음연도의 녹색제품 구매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12월말까지 이를 시 홈페이지 및 시보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수립) ① -----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

② ~ ④ (현행과 같음)

목포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 (위탁신청) ①종합유통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관리·운영위탁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생략) 2. <u>법인등기부등본</u> 3. ~ 7. (생략) ② (생략)	제7조 (위탁신청) ①----- ----- ----- ----- -----. 1. (현행과 같음) 2. <u>법인등기사항증명서</u>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목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략) 2. “지역건설산업체”(이하 “지역업체”라 한다)란 법인의 경우에는 <u>법인등기부등본</u> 에,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목포시에 두고 건설산업을 영위하는 업체를 말한다. 3.·4. (생략)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2. ----- ----- <u>법인</u> <u>등기사항증명서</u> 에----- ----- -----. 3.·4. (현행과 같음)

목포시 인터넷 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7조 (비밀번호관리) 업무부서의 장은 담당자의 비밀번호를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비밀번호관리) -----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 -----.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32 호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100분의 50으로”를 “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법 제75조의2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경감률”은 <u>100분의 50으로</u> 한다.	제8조(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구역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한 감면) ----- ----- <u>재산세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으로 하고, 그 다음 3년간은 재산세의 100분의 25로</u> ---.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33 호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할 때 동일인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

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u>②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위촉하 는 경우에는 같은 사람이 3개 위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 거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 하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u>	<u>②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 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3년 이내로 한 다. 이 경우 시장은 위촉직 위원 을 위촉할 때 동일인이 3개 위 원회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되거 나 같은 위원회에 2회를 초과하 여 연임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u>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u><신 설></u>	제9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 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u>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 자였던 자가 해당 안건의 당 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 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인 경우</u>
	2. <u>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 우</u>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연
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
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
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
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
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
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34 호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민주시민상 포함)”을 삭제한다.

제5조제4호를 삭제한다.

제8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9조 제3항 중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삭제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에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 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공무원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사생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포상 계획에 정하는 자

제11조의3(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당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민주시민상 포함), 감사장, 상장으로 나누어 시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 (삭제) ----- -.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의 경우에 수여한다. 1 ~ 3(생략)	제5조(표창장)----- -----. 1 ~ 3 (현행과 같음)
4. <u>민주시민상은 교통 및 거리질서 확립, 공중도덕준수, 상도의 준수 및 거래질서 확립 자연보호 및 도시환경 정화 자치센터발전 및 시민의 시정참여실현과 민주적이고 개방적 도시문화 형성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경우</u>	<삭제>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 ② (생략)	제8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민주시민 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u>	<삭제>
1. <u>수상자 사진을 시청 민원실에 게시</u>	
2. <u>각종 지방행사에 초청 사기 진작</u>	
3. <u>수상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간담회 개최</u>	
4. <u>수상자는 1년간 시정 모니터로 활</u>	

용 시정 참여 기회 부여

5. 기타 수상자의 사기 진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포상절차) ① ~ ②(생략)

③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표창규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포상적부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생략)

제10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에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② 민주시민상은 년 1회 시행되 인원은10명 내외로 한다.

<신설>

제9조(포상절차)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삭제) -----

-. 다만, 대회 및 경연 결과 등으로 포상하는 상장의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④ (현행과 같음)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에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의2(포상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포상에서 제외한다.

1. 재직 중 징계 처분(불문경고를 포함한다)을 받은 사람으로서 징계기록이 말소되지 않은 사람 및 징계 요구 중에 있는 공무원

<신 설>

2. 성범죄, 음주운전 등 공·사생
활을 통하여 직장이나 사회로부
터 지탄을 받고 있는 자

3. 그 밖에 시장이 포상 계획에 정
하는 자

제11조의3(포상의 취소) ① 시장은
이미 시행한 포상과 관련하여 다
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경우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포상권자가 정한 결격사유 해
당자에게 수여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을 취소할 때
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
쳐야 한다. 다만, 감사장 및 상장의
취소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포상이 취소된 자에게
수여된 표창장, 감사장, 상장 및 이
와 관련하여 수여한 패 또는 물건
· 금전 등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
다.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35 호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7호(종전의 제4호) 중 “심의위원회”를 “심의위원회의”로 한다.

3. 변호사·공인회계사·노무사·공인원가분석사·기술사·건축사·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
4.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5. 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6. 해당 사무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생략)	제8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⑤ ----- ----- -----. -----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3. <u>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	3. <u>변호사 · 공인회계사 · 노무사 · 공인원가분석사 · 기술사 · 건축사 · 세무사 등 관련 자격이 있는 사람</u>
<신 설>	4. <u>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u>
<신 설>	5. <u>대학에서 해당 민간위탁사무 분야와 관련된 학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u>
<신 설>	6. <u>해당 사무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실무 경력자</u>
4. 그 밖에 <u>심의위원회 전문성 · 공정성 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u>	7. ----- <u>심의위원회의</u> ----- ----- -----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36 호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생략) ② 위원회는 9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다.</u>	제7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u>구성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 원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 도록 한다.</u>
③ ~ ⑤ (생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37 호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는 어르신에 대한 사기진작과 보건복지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노인복지법」 제4조와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에 대한 지급 대상과 지원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 대상)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의 지원 대상(이하 “지원 대상”이라 한다.)은 지급 기준일 현재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노인요양시

설 입소자는 제외한다.

②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이 전입 또는 연령 등의 사유로 인하여 최초로 해당하게 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의 다음 달부터 지원한다.

제3조(지원 대상의 결정 및 관리)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 없이 동장이 행정전산망을 통하여 일괄 조사·결정하고 관리대장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지원 대상자의 카드 수령은 별지 제1호서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수령명부에 날인 또는 서명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② 본인이 직접 수령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원 대상의 배우자, 지원 대상의 직계존비속 및 직계존비속의 배우자, 또는 미혼 단독가구의 경우 형제자매(이하 “대리인”이라 한다.)가 대리하여 수령할 수 있다. 다만, 대리인이 수령할 경우 지원 대상의 신분증 및 대리인의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4조(지원 방법 및 절차) ①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은 시장이 발급한 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의한다.

② 시장은 카드를 일괄 발급하여 관할 동장을 통하여 지원 대상자에게 교부한다.

③ 지원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④ 지원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이 부담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지급받은 카드를 분실하거나 훼손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 재발급받을 수 있다.

제5조(지급 시기) 시장은 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분기별로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만,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달부터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6조(카드의 사용) ① 카드는 제8조에 따라 시에 등록한 목포시에 소재하는 목욕업소와 이·미용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카드 지원금의 사용기한은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이다.

② 카드는 지원 대상자 본인만 사용할 수 있으며,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양수할 수 없다.

③ 카드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업소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연령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7조(사용 중지 등) ① 시장은 지원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1. 지원 대상자의 사망, 전출, 주민등록 말소 등이 확인된 경우. 이 경우 관할 동장은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가족 등으로부터 카드를 지체 없이 반환받아야 한다.

2. 지원 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3.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제8조(가맹점 등록 등) ①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가맹점 등록 신청을 받은 시장은 서류 검토 후 7일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③ 가맹점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맹점임을 표시할 수 있다.

제9조(가맹점 준수사항 및 취소) ① 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카드 사용을 거절하거나, 카드 사용 대상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 목욕 및 이·미용 서비스의 제공 없이 카드를 결제하는 행위
3. 그 밖에 시장과 계약한 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시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 제1항의 가맹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지원 대상자가 아닌 것을 알면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카드를 사용하게 한 경우

③ 시장은 가맹점이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산 요금의 지급을 거부하거나, 정산 요금에 대하여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지원사업비의 정산 등) ① 시장은 목포시 목욕업협회장, 이·미용사회 목포시지부장 및 바우처 카드 발급 금융기관 등과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 및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 지급에 관한 세부 사항은 제1항에 따른 업무협약에 따른다.

③ 시장은 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업체로부터 가맹점별 카드 결제 내역을 제공

받아 확인 후, 가맹점에서 신청한 계좌로 매월 지급한다.

제11조(카드 관리 시스템 운영) ① 시장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카드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카드 관리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과 전문업체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서를 작성하고, 그 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2조(카드의 출납관리 등) 시장은 노인장애인과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4호 서식의 카드 출납대장을 관리하게 하고, 동장으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카드 수령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카드 수불대장을 전산 또는 장부로 관리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지도·점검) 시장은 가맹점이 지원 목적대로 적정 운영하는지에 대하여 필요하면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카드 사용에 관하여 지도·점검을 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지원된 노인 목욕 및 이·미용권의 사용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별지 제1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수령명부

[illegible]

[별지 제2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서

		카드번호	
구 분	[]재발급([]분실 []훼손 []그 외)		
지급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리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대상자와의 관계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에 따라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본인은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을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및 제1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	5년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			
제공받는 기관	제공목적	제공하는 항목	보유기간
「목포시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른 금융기관 및 제10조에 따른 위탁업체	바우처 카드 제작 및 관리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등	5년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 서비스 제공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 아니오)			
20 . . .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공 신청서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으로 본인의 서류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만일,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리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			
(본인 수령) 지급 대상자 신분증			
(대리 수령) 위임장, 지급 대상자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별지 제3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 위임장

본인 (위임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대리인 (수임자)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위임자와의 관계	위임내용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 권한의 위임

본인(위임자)은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재발급 신청에 관한
권한을 위 수임자에게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위임자(본인):
수임자(대리인):

(서명 또는 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 업무 담당자 확인 사항: 위임자 및 수임자의 신분증

[별지 제4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출납대장

[illegible]

[별지 제5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수불대장

[illegible]

[별지 제6호서식]

노인 목욕비 및 이·미용비 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

구분	[]신규 []변경 []탈퇴			
가맹점 정 보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사업구분	☐ 목욕 ☐ 이·미용
대표자	성 명		휴대전화	

「목포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조례」 제8조에 따라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신규·변경·탈퇴)을 신청합니다. ※ 변경·탈퇴사유 : _____

20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대표자와의 관계:)

목포시장 귀하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

1.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정보제공 목적 : 목포시 어르신 목욕비 및 이·미용비 지원 사업 가맹점 등록

2. 수집항목 : 가맹점 정보 및 개인정보 등

3. 정보보유 및 이용기간 : 사업수행기간

4. 제3자 정보제공처: 시와 협약한 시스템 운영업체

5. 귀 업체는 필수 이외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을 수 있으며, 위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 제3자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필수항목은 사업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므로 동의하지 않을 경우 등록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단,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에 한해 수집함.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

신 청 인 :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사본)·영업신고필증 (사본)·사업자등록증명원 원본 중 1

2. 대표자 또는 가맹점 명의 통장 사본

3. 대표자 또는 신청인 신분증 사본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38 호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남권청소년축제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조례는 「청소년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를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로, “라 한다)”를 “라한다)”로 한다.

제3조제3항 중 “호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를 “호선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촉직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관한사항을 담당하며 제6조”를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제8조”로

한다.

제5조 중 “하되”를 “하되, 2회에 한하여”로,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 기간으로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로, “거쳐”를 “거쳐 위원을”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 중 “출석위원”을 “부의된 안건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으로 한다.

제9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남권청소년축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남권청소년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를 “서기를 둔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사는 서남권청소년축제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의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이후 위촉되는 위원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u>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5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의</u> 규정에 의하 여 목포시가 추진하는 서남권청 소년축제(이하 “축제” 라 한 다)를 청소년의 육성·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서남권청소년축제추 진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u>한다</u>)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로 한다.	제1조(목적) -- <u>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8조 및 「청소년활 동 진흥법」 제5조와 「지방자 치법 시행령」 제78조</u> ----- ----- ----- ----- ----- <u>라한다</u>)- ----- -----.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 장, 사무국장은 위원 중에서 <u>호 선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u> <u><신 설></u>	제3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u>호선한다.</u> ④ <u>위촉직위원의 정수는 전체 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고, 특정 성별이 위촉직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u>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②

(생략)

③ 사무국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축제실무전반에 관한사항을 담당하며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남권청소년축제기획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을 겸직한다.

제5조(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잔임기간으로 한다.
<단서 신설>

제6조(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촉할 수 있다.

1. ~ 4. (생략)

<신설>

(현행과 같음)

③ -----
----- 관한 사항을 담당하며 제8조-----

-----.

제5조(임기) -----

----- 하되, 2회에 한하여 -----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그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해촉)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거쳐 위원을 -----
-.

1. ~ 4.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제8조(회의) ①·② (생략)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서남권청소년축제업무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서남권청소년축제업무담당주사가 된다. <신설>	<u>자문·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u>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8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부의된 안건 등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 제9조(간사 및 서기) ① ----- 서기를 둔다. ② 간사는 서남권청소년축제 업무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
---	---

「목포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39 호

목포시 생활인구 기본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누림시민제도의 운영 · 발전 및 권익증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목포시의 생활인구를 확대하고 지역활력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면서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나. 통근, 통학, 관광, 휴양, 업무, 정기적 교류 등 특정 지역을 방문하여 1일 동안 머무른 시간의 총합이 3시간 이상인 경우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다.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

람

2. “목포누림시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등록한 사람

나. 「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의 주민

다.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를 발급 받은 사람

3. “목포누림시민제도”란 시에 연고가 있거나 시에 관심이 있는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들로써 시에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4. “목포누림시민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표를 말한다.

가. 목포누림시민으로 등록한 사람이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는 회원증

나. 「목포시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매결연을 체결한 지방자치단체 또는 도시를 주소로 하는 신분증

다. 「목포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선불카드

5. “목포누림시민 가맹점”이란 시에 소재하는 특산물 판매소, 음식점소, 숙박업소, 박물관, 체육시설 등 상품을 판매하고 거래를 하는 서비스 제공자 중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자를 말한다.

6. “목포누림시민 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이란 제2조 제2호가목에 따라

목포누림시민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가입 전 동의를 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목포누림시민으로 가입한 시점부터 탈퇴까지의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일련의 행위, 가입, 탈퇴, 이용방법, 규제, 분쟁의 조정 등을 전반적으로 규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인구 사업)

① 시장은 생활인구를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한 국내·외 지역 교류 사업
2. 시에서 개최하는 축제, 행사의 참여·방문 지원
3. 노후·유희시설의 정비 및 활용 사업
4.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사업
5. 생활인구 확대 사업 추진을 위한 시민 및 시 방문객 등 홍보 대상자에게 홍보물품 제공
6. 관광, 축제, 이벤트, 할인 혜택 등 지역 정보 제공
7. 목포누림시민제도 운영 및 가맹점 지원
8. 그 밖에 생활인구의 확대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자격) 목포누림시민은 시와 시 외에 주소를 두며 시에 관심이 있는 내·외국인 본인의 희망에 따라 누구든지 될 수 있다.

제6조(등록)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목포누림시민이 되려는 사람은 시 인터

넷 홈페이지의 등록절차에 따라 약관에 동의 후 등록할 수 있다.

제7조(제도의 운영)

- ① 시장은 목포누림시민제도 운영을 위하여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 ② 약관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시민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어야 한다.
- ③ 시장은 목포누림시민제도의 효율적인 운영과 제도 발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목포누림시민증 발급
2. 목포누림시민제도의 지속적인 발전 및 투자에 관한 사항
3. 각종 웹 서비스 시스템의 보완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목포누림시민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서비스 제공
5. 전자우편, 문자서비스, SNS, 간행물 등을 통한 정보의 제공
6. 목포누림시민 확보 및 사업 홍보를 위한 이벤트 참여자에게 기념품이나 상품권 등 경품 제공
7. 목포누림시민 가맹점 확보 및 관리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공공시설의 입장료 감면 등 지원) 시장은 목포누림시민증을 발급 받은 사람에게는 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입장료, 사용료 등을 목포시민과 동일하게 감면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개인정보보호)

-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을 통하여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처리한다.

제10조(시스템의 안전대책)

① 시장은 인터넷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정보의 손상 및 파괴 등 사고에 대비하여 일정한 주기로 백업한 자료를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사고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사무의 위탁)

① 시장은 생활인구 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시설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민간 위탁하는 경우에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생활인구의 확대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을 「목포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목포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40 호

목포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과 안전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목포시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기자동차”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2. “전용주차구역”이란 목포시에 소재하는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주차구역을 말한다.
3. “충전시설”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로서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고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말한다.
4. “안전시설”이란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를 말한다.

5. “관계인”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화재예방 대응계획 수립) 시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현황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2.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
3.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안전시설의 설치 지원) ① 시장은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보강하려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열화상 카메라,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 감시 및 경보설비
2. 물막이판, 충수용 급수설비, 상방향 직수장치 등 소화설비
3. 차량용 질식소화덮개
4.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와 범위 및 대상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제7조(홍보 및 교육) ①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홍보 및 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전기자동차 등 전용주차구역에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계인에게 자체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시행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8조(관계인에 대한 권고) 시장은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

1. 충전시설의 화재 대응 및 방지 기능 탑재
2. 배터리 상태 정보 제공 및 과충전을 방지하는 정보통신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
3.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주차장 진출입 램프 인근 등 외기(外氣)에 가까운 구역에 설치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사무의 위탁) 시장은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전문성 있는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해 차량 제조사, 충전시설 관리 주체, 유관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41 호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8호 중 “아동”을 “아동·청소년”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다문화가 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 다. 1. ~ 7. (생 략) 8. 다문화가족 구성원인 <u>아동</u> 의 보육·교육 지원 및 한국어교 육 등 언어능력 제고에 필요 한 지원 9. (생 략)	제4조(지원사업) ----- ----- ----- --. 1. ~ 7. (현행과 같음) 8. ----- <u>아동·청</u> <u>소년</u> ----- ----- 9. (현행과 같음)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회의의 설치) ① (생 략)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 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u>구성한</u> <u>다</u> . ③ ~ ⑤ (생 략)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회의의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구성하며</u> <u>「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u> <u>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u> <u>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u> <u>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u> ③ ~ ⑤ (현행과 같음)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42 호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목포시기 등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목포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상징물”이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징물을 말한다.

1. 시기: [별표 1]
2. 문장 및 휘장: [별표 2]
3. 마스코트: [별표 3]
4. 도시브랜드: [별표 4]
5. 시화: 백목련, 시목: 비파, 시조: 학

제3조(상징물의 지정 등) ①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상징물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려는 경우 제10조에 따른 목포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사전심의 후 여론조사, 공청회 등을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② 시장은 상징물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단체 등에 조사나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상징물을 지정 또는 지정 취소하거나 규격, 색상 등 세부 사항을 변경할 경우 시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4조(상징물의 관리) 시장은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5조(상징물 관련 사업의 추진) ① 시장은 상징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홍보물·응용 상품의 개발, 제작 및 배포
2. 상징물 활용 수익사업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상징물의 사용신청) ① 상징물을 활용한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상징물을 행사 등에 이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목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시의 사무 또는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나 소모품 등을 제작하는 경우
2. 그 밖에 상징물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계속하여 상징물을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 만료 30일 전에 사용허가 갱신을 신청해야 한다. 다만, 사용허가 기간이 30일 미만인 경우 사용허가 기간 만료일 전에 신청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허가 및 취소) ①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상징물의 사용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 목적 등을 검토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상징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여 허가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목포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서에 허가 내용 등을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않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2. 사용 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3. 상징물의 품위를 떨어뜨린 경우

4. 사용료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8조(사용료) ① 시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인은 별표 5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시 후원 사업 또는 행사의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사용료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해야 한다.

1. 상징물 사용일 전에 사용자가 반환 신청을 한 경우

2. 시의 사정으로 상징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목포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상징물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목포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상징물 지정·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실·국장

2. 위촉직 위원: 대학교수 등 상징물·브랜드·디자인·홍보·문화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상징물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상징물 관리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목포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사용한 자가 이 조례 시행 이후 해당 상징물을 다시 사용하거나 새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표 1] 시기

[별표 2] 문장 및 휘장

[별표 3] 캐릭터

[별표 4] 도시브랜드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목포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서

■ 목포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표 1]

1. 기 본 형



o 색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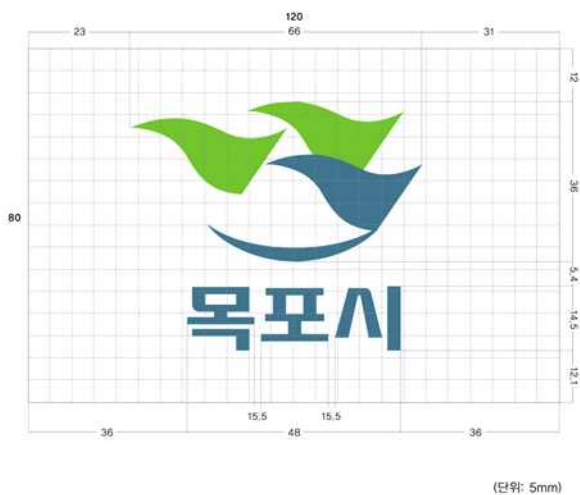
- 바탕 : 흰색 (White 100%)
- 상단 두개의 깃발 : 녹색 (Pantone 368C:Cyan 60%, Yellow 100%)
- 하단 한개의 깃발 및 글씨 : 청색 (Pantone 308C:Cyan 100%,
Yellow 30%, Magenta 80%)

o 규 격

- 기의 가로 세로의 비율은 3:2로 한다.
- 기의 표준크기는 가로 120cm, 세로 80cm로 한다.

2. 작 도 법

.작도상 배치 비례는 다음과 같이 하고, 각 도형의 작도법은 모눈의 비율과 같다.



3. 설 명 : 항구도시의 상징인 배를 형상화한 상징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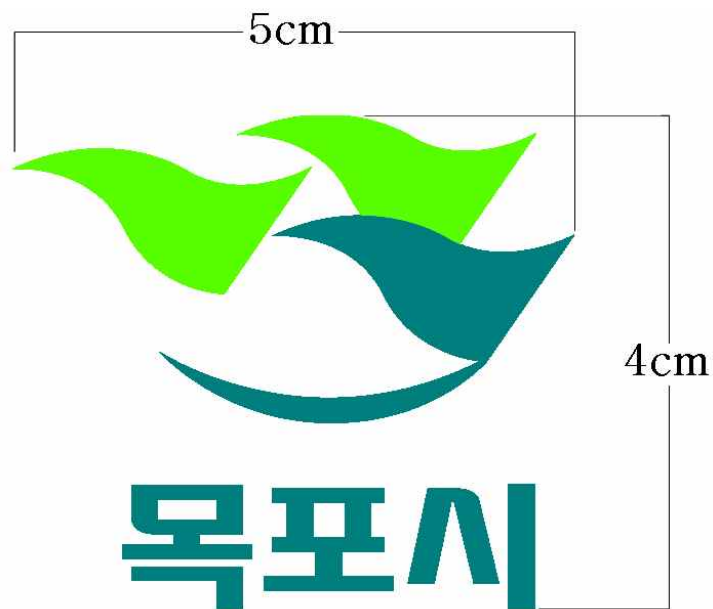
- 기의 바탕(화이트) : 변화·도약·발전하는 **목포시의 비전**을 표현
- 세 개의 도형(상단 그린, 하단 블루) : **파도의 역동성**을 깃발의 형태로 상징
- 중앙의 백공간(화이트) : 목포시의 제1상징 요소인 **유달산의 이미지**
- 하단곡선(블루) : 항구도시의 상징인 **배를 형상화**

■ 목포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표 2]

1. 목포시 문장



2. 목포시 휘장



■ 목포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표 3]

1. 기 본 형



[포포(좌) & 포미(우)]

2. 설 명

- 청정도시 목포의 파도와 물의 이미지를 목포시의 새로운 심벌과 결합한 밀리니엄 베이비 마스코트입니다. '포포와 포미'는 목포시의 지명과 항구를 지칭하는 '포'(port)와 아름다울 '미'를 사용하여 귀엽고 발랄한 느낌을 부여한 이름입니다.

3. 응용형



3. 응용형(~계속)



■ 목포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표 4]

1. 슬로건 & 로고

한글조합형

낭만항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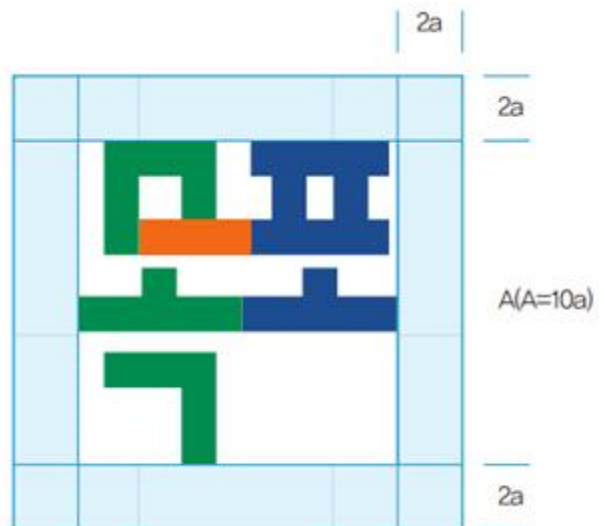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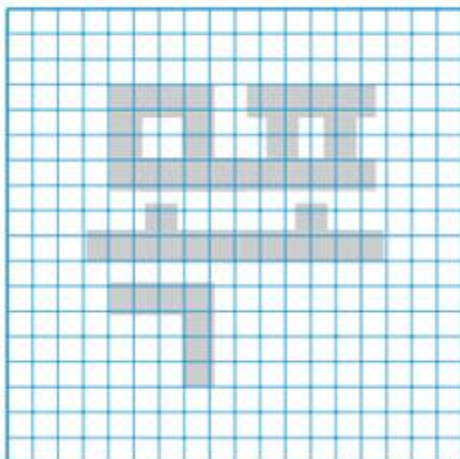


한글영문조합형

낭만항구
ROMANTIC PORT MOKP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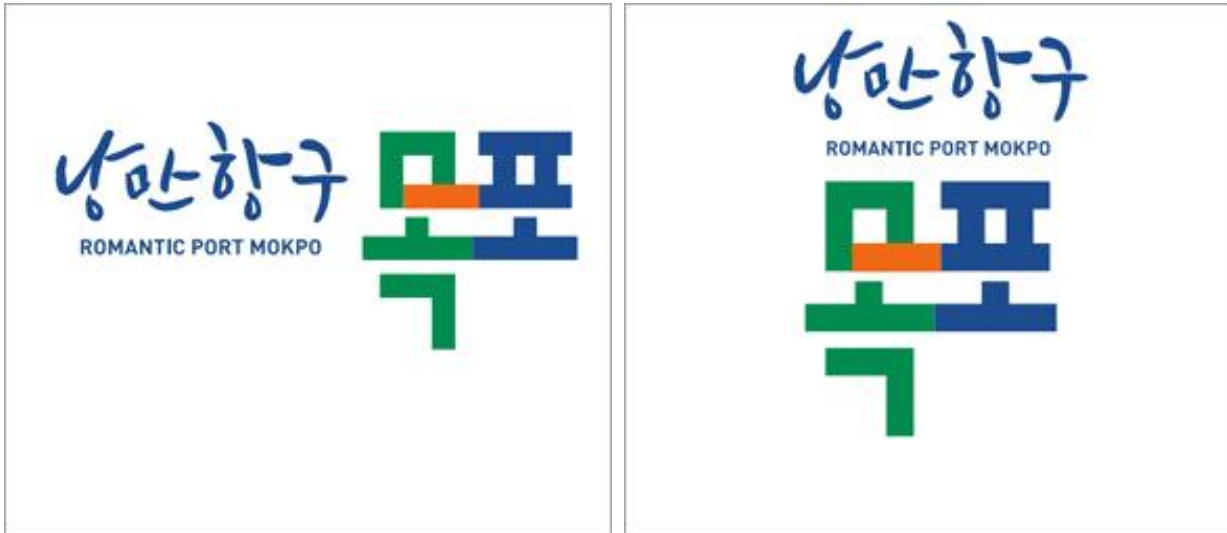


[슬로건]



[로고]

2. 시그니처: 가로형 & 세로형, 그래픽



[가로형(좌) & 세로형(우)]



[그래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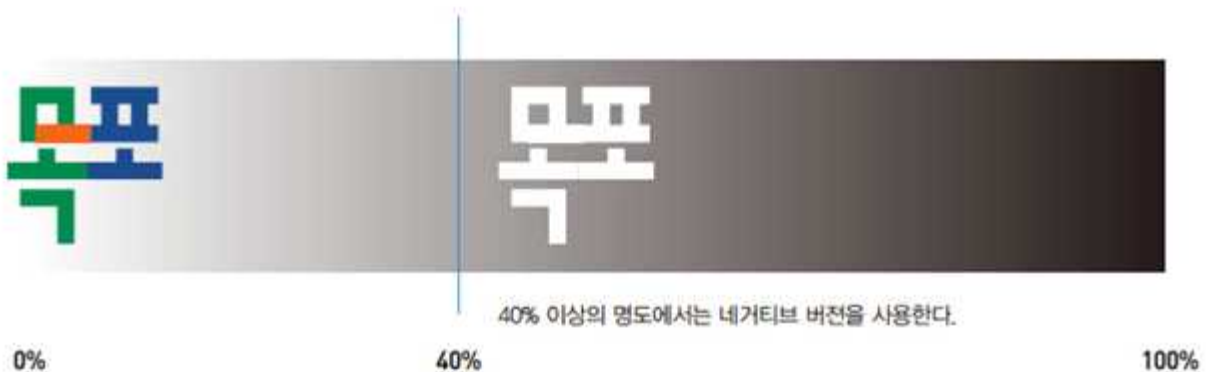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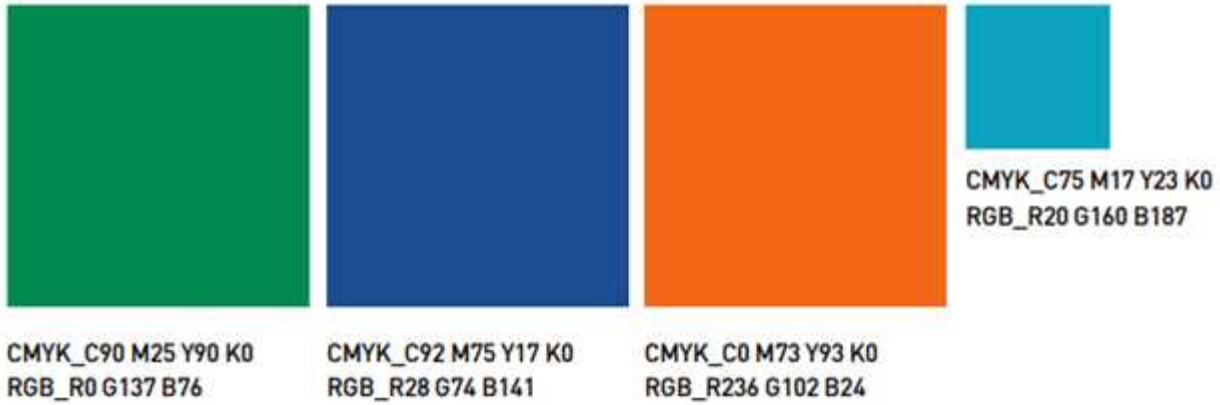
3. 브랜드 의미

- 목포는 해양과 내륙이 만나는 관문이자 서남해안의 다양한 선박들이 정박하는 항구도시입니다. 또한, 가수 이난영을 비롯해 동양화가 남농 허건, 극작가 차범석과 김우진, 여성소설가 박화성, 무용가 최청자 등 대한민국 예술과 문화에 한 획을 그은 걸출한 예술인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예향 도시입니다. ‘낭만항구’는 이러한 목포의 지리적 특성과 문화적 감성을 상징하며, 대표 관광도시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4. 디자인 컨셉

- 간결한 디자인을 통해 호남의 대표도시로 도약하는 젊고 당당한 이미지를 나타냈습니다. 목(木)의 초록색과 포(浦)의 바다청색을 적용하였으며, 중앙의 주황색은 목포 앞바다에 비친 울긋불긋한 물결의 반짝임을 표현하여 낭만적인 느낌을 강조했습니다.

5. 브랜드 전용 색상



6. 기타: 도시브랜드 사용 시 ‘도시브랜드 가이드라인’ 지침에 따름.

※ 목포시 누리집 HOME > 목포소개 > 목포시상징 > 도시브랜드

■ 목포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20일
------	------	------	-----

신청인 (대표자)	성명(상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신청내용	사용 상징물
	사용 · 수익기간
	사용(변경) 목적
	사용 · 수익 방법 (구체적으로 작성)
	저작물의 변형 · 변경 또는 개작 시 그 내용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면제사유 등)

「목포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 상징물의 ([]사용허가, []사용허가 변경)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목포시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상징물 사용계획서 1부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1. 신청인(대표자) 주민등록표 초본 2.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해당사항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초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성 명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목포시장

신청서 작성

접수

검토

허가서 교부

허가·결정



생활인구 100만, 동아시아 해양허브

목 포 시



수신자

(경유)

제 목 목포시 상징물 사용허가(변경) 통지

「목포시시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허가 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신 청 인 (대 표 자)	성 명 (상 호)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사업장)			
상 징 물 (상 징 물 명 , 등 록 번 호)				
사 용 기 간		년 월 일 ~ 월 일(일간)		
사 용 목 적				
사 용 료		[]유상 (원), []무상 (근거:)		
허 가 조 건		붙임문서		

끝.

목 포 시 장

직인

기안자 직위(직급) 서명

검토자 직위(직급)서명

결재권자 직위 (직급)서명

협조자

시행 처리과-일련번호(시행일자)

접수

처리과명-일련번호(접수일자)

우 주소

/ 홈페이지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 기안자의 공식전자우편주소

/ 공개구분

210mm×297mm[백상지 (80g/㎡)]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43 호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축제 추진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시행령」 제78조”를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축제추진위원회”로 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문화예술과장, 해양개발과장, 수산산업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4명”을 “2명”으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전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전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행사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제2항 위촉위원의 정수는 현재 위촉된 위원의 임기 종료 이후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목포시에서 개최하는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8조----- ----- ----- -- <u>축제추진위원회</u> ----- ----- ----- -----.
제2조(기능) ① 위원회에서 관할하는 축제는 다음과 같다.	제2조(기능) ① <u>목포시 축제추진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한다)----- -----.
1. · 2. (생략)	1. · 2.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조(구성) ① (생략)	제3조(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관광문화교육국장, 관광과장, <u>문화예술과장</u> , <u>해양개발과장</u> , <u>수산산업과장</u> 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 ----- ----- <u>문화예술과장</u> ----- ----- ----- -----.
1. 시의회 의원 4명	1. ----- 2명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3조(평가 및 결산) (생략)

<신 설>

제6조의2(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가 당사자인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연구·용역 등을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이해관계인은 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 의결로 결정한다.

③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평가 및 결산) ① (현행 제 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는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 행사 추진 시 반영하여야 한다.

4. 위원이나 위원에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이 된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44 호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문화예술회관 관리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목포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을 “목포시문화예술회관”으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련 용어”로 한다.

제7조제3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6.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사람

제8조제1항의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u>목포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u> 의 관리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u>목포시문화예술회관</u> ----- ----- ----- -----.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u>사용하는 용어</u> 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 (용어의 정의) ----- <u>사용하는 목포시문화예술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 관련 용어</u>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① 삭제	제7조 (사용료의 감면)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삭제	
<u><신설></u>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u><신설></u>	6. 「장애인복지법」 제6조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하여 자립하기가 매우 곤란한 장애인(중증장애인)
<u><신설></u>	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하는 사람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는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여야 한다.

② (생략)

③ (생략)

제8조(사용료의 납부 및 반환)

① 사용료 납부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별표] <개정안>

문화예술회관 사용료

1. 기본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시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공 연 장	공연 (영화)	오 전	68,000	1)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 가산 2) 공연연습, 무대설비 등 사용할 때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3) 다음 날 공연 또는 행사준비(철거) 사용 시 (23:00이후)에는 야간사용료의 50퍼센트 징수 4) 공연을 위한 무대만 설치되어 있을 경우 해당 기준 사용료의 30퍼센트 징수 ◦ 초과시간 징수 · 30분 미만 사용할 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20퍼센트 가산 · 30~60분 미만 사용할 때 : 해당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 가산 · 60분 이상 사용 시 : 다음 회 사용료 전액 가산 ※ 다만, 사용기간은 원상복구 후 다음 회 사용 가능시간까지로 한다.
		오 후	87,000	
		야 간	113,000	
	행사	오 전	200,000	
		오 후	200,000	
		야 간	200,000	
	전 시 실 (3.3㎡당)	1 일	500	
야외예식장		1 일	무료	※ 부대비용(식당, 사진 등)은 결혼 당사자가 부담

2. 부대시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시 설 명		기 준	사 용 료	비 고
냉·난방 시 설	공 연 장	1회	연료비 사용 현가에 대한 10퍼센트 가산	
	전 시 실	1회		
피아노	스타인웨이	1회	100,000	·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 조율비는 사용자가 부담
	가 와 이	1회	50,000	
	국산그랜드	1회	20,000	
무 대 시 설	덧 마 루	1회	15,000	·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 사 용료의 50퍼센트로 함
	고 무 판	1회	35,000	
무 조 대 명	무 대 조 명	1회	30,000	·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무 빙 라 이 트	1회	10,000	· 공연연습 사용 시에는 기준 사용료의 50퍼센트로 함
	효과기(눈,비,구름 등)	1회	30,000	·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드라이아이스	1회	40,000	·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스모그기기	1회	20,000	·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보 면 대	1회	20,000	
영사시설	비디오프로젝터 (20,000ANSI 이상)	1회	50,000	
	비디오프로젝터 (20,000ANSI 미만/대당)	1회	25,000	
무 음 대 향	마이크 (개당)	유선	1회	2,000
		무선	1회	5,000
	녹음	CD, MD	1회	20,000
		카세트테이프	1회	10,000
		릴테이프	1회	10,000
	음향반사판		1회	20,000
	음 향 기 기		1회	60,000

3. 기타 사용료

(단위 : 원)

시 설		구 분	기준	사 용 료	비 고
영 화 촬 영			1 회	25,000	
중 계 방 송	T.V(비디오 녹화)		1 회	T V 30,000 비디오 10,000	재료비는 사용자 부담
	라 디 오		1 회	20,000	
의상 및 소도구 대여			1 회	취득가액의 5퍼센트	
예식장 비품일체			1 회	무료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45 호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국내·외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되”를 “20명 이내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로 한다.

제3조제4항 중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를 “그 외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로 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사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u>당 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 성하되</u> , 당연직 위원은 목포시장· 부시장·기획관리국장·미래전략산 업국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목 포시의회 관광경제위원회 소속 의 원중 2명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 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제3조 ① (현행과 같음) ② ----- ----- <u>당</u> <u>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성</u> <u>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되</u> ,----- ----- ----- ----- ----- ----- --.
제3조 ③ (생 략) ④ 목포시의회 의원인 위원과 목 포시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 는 각각 당해 직위의 재임기간 으로 하고, 그 외 위촉위원의 임 기는 <u>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u> <u>다</u> .	제3조 ③ (현행과 같음) ④ ----- ----- -----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 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 간으로 한다.
⑤ (생 략) 제4조의2(신설)	⑤ (현행과 같음) 제4조의2(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 를 제외하고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4조의3(신설)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가 위촉 해제를 희망한 경우
2.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 비위 사실,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4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또는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5. 위원 본인이 해당 안건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관계인인 경우

② 위원회의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5조 ~ 제31조 (생략)

제5조 ~ 제31조 (현행과 같음)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46 호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를 “목포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출생기본수당”이란”을 ““출생기본소득”이란”으로, “지급하는 수당을”을 “개별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를”로 한다.

제3조 중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수당의”를 “소득의”로 하고, 같은 항 및 제4항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신청일부터 출생아동과 모든 보호자는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지급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제5조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출생기본수당을”을 “출생기본소득을”로, “출생기본수당 신청서”를 “출생기본소득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4호, 제5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출생기본수당 소급”을 “출생기본소득 소급”으로,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출생기본소득 지급”으로, “출생기본수당을”을 “출생기본소득을”로 한다.

제8조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출생기본수당의”를 “출생기본소득의”로,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출생기본소득 지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제10조 중 “수당의 반환”을 “소득의 반환”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3호까지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제11조 및 제12조 중 “출생기본수당”을 각각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중 “출생기본수당”을 “출생기본소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u>	<u>목포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u>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에 주 소를 둔 출생아동의 양육을 안정 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u>출생기본 수당</u>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u>출생기본수당</u>”이란 제4조 에 따라 출생아동에게 <u>지급하는 수당</u>을 말한다. 2. “출생아동”이란 다음 각 목 에 모두 해당하는 아동을 말한 다. 가. (생 략) 나. (생 략) 3. (생 략) 제3조(시장의 책무)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는 <u>출생기본수당</u>이 원활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	제1조(목적) ----- ----- ----- <u>출생기본 소득</u>----- -----. 제2조(정의) ----- -----. 1. “<u>출생기본소득</u>”이란 ----- ----- <u>개별적이며, 정 기적으로 지급하는 현금 또는 지역화폐</u>를 ---. 2. ----- -----. 가. (현행과 같음)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제3조(시장의 책무) ----- ----- <u>출생기본소득</u>----- ----- -----.

제4조(지급대상) ① 시장은 출생아
동에게 1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
부터 19세가 되는 날이 속한 달의
전달까지 매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출생기본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수당을
지급받으려는 출생아동과 그 보호
자는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부터
계속하여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 신청일 기
준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
어야 한다.

③ 시장은 동일한 출생아동의 보
호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수당의
중복지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호자 중 1명이 다른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별지 제1호서식의 전
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배
우자 등 수령 동의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출생아

제4조(지급대상) ① -----

출생기본소득-----.

② 제1항에 따라 출생기본소득을
지급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출생아동과 그 보호자 중 1인
이상은 출생아동의 출생신고일
부터 계속해서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지급
신청일부터 출생아동과 모든 보
호자는 전라남도 내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2. 지급신청일 기준 출생아동과
보호자 중 1인 이상이 목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③ -----
-----소득의

--- 출생기본소득 -----

-----.

④ -----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1. 목포시 밖의 지역으로 전출하
는 등 출생기본수당 지급 자격
을 상실한 경우

2. 3. (생략)

4. 출생기본수당의 수급을 거부한
경우

5.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지급
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
이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 중단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한 경우 전출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목포시로 다시 전입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지원아동에 대하여 1회에 한정하여 출생기본수당을 다시 지급할 수 있다. 또한 전라남도 밖으로 전출하기 전에 목포시 외 전라남도 소재 시·군에 거주한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출생기본
수당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 지급

-- 출생기본소득

1.

출생기본소득

2. · 3. (현행과 같음)

4. 출생기본소득

5. ----- 출생기본소득

②

출생기본소득

출생기본

소득

③ -----출생기본
소득-----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아동 또는 그 보호자가 별지 제2호서식의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내용을 확인한 결과 소급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지원 중단된 기간 동안의 출생기본수당을 소급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8조(성과평가) 시장은 사업 시행 후 5년마다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성과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를 종합평가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전라남도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른 성과평가를 할 때 합동으로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출생기본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출생기본수당 지급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출생기본소득-----
-----.

④ -----

-----출생기본소득 소급-----

-----출생기본소득 지급 -----

----- 출생기본소득을 -----.

제8조(성과평가) -----
----- 출생기본소득 -----

----- 출생기본소득 -----

-----.

제9조(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
----- 출생기본소득의 -----

----- 출생기본소득 지급 -----
-----.

다만, 「목포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목포시 인구증가대책추진협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 절차
2. 제7조제4항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소급 지급
3. 제8조에 따른 출생기본수당 지급에 대한 성과평가
4. 그 밖에 출생기본수당의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수당의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한 출생기본수당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1. 제7조에 따라 출생기본수당 지급을 중지해야 하는 기간에 출생기본수당이 지급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생기본수당을 지원 받은 경우
3. 그 밖의 사유로 출생기본수당이 잘못 지급된 경우

-----.

② -----
-----.

1. ----- 출생기본소득 -----
2. ----- 출생기본소득 -----
3. ----- 출생기본소득 -----
4. ----- 출생기본소득-----

제10조(소득의 반환) -----

----- 출생기본소득-----
-----.

1. -----출생기본소득 -----
----- 출생기본소득 -----
2. ----- 출생기본소득 -----
3. ----- 출생기본소득 -----

제11조(개인정보 수집) 시장은 출생
기본수당 지급 및 사후관리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
 조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출생기본
수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
 부를 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개인정보 수집) ----- 출생
기본소득 -----

 -----.

제12조(권한의 위임)-----출생기본
소득 -----

 -----.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소득 배우자 등 수령 동의서

동의자 (배우자 등)	성 명		주 소	
	생년월일 (성별)		수령자 성명	

본인은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소득 수령을 포기하고 「목포시 출생기본소득 지급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따라 배우자 등이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소득을 수령하는데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인)

※ (인)은 자필 서명으로 한다.

전라남도-목포시 출생기본소득 소급 지급 신청서

소명인 인적사항	주 소			
	성 명		생년월일 (성별)	
통 보 내 용				
소 명 내 용				
20 . . .				
신청인 (서명)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47 호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반려동물 및 유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이라한다)”를 “이라 한다)”로 한다.

제2조제2호 중 “이라한다)”를 “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유실·유기동물”을 “유기동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법 제15조”를 “법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영 제3조”를 “영 제4조”로 한다.

제5조제4항 중 “영 제3조”를 “영 제4조”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 5년마다”를 “위하여”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를 “수립·시행할 수 있다”로 하고, 다음 문장을 신설한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시민의 성별, 연령 및 반려동물 양육 특성 등을 고려한 사항이 반영되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3항제4호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제7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한 안건에 대한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제1항 중 “유실·유기동물”을 “유기동물”로, “법 제15조제1항”을 “법 제35조제1항”으로, “법 제15조제3항”을 “법 제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6조”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규칙 제15조제4항”을 “규칙 제16조 및 제20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15조제7항”을 “법 제36조제4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법 제14조”를 “법 제34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법 제39조제1항제3호”를 “법 제86조제1항제3호”로 한다.

제15조 중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제1항”을 “법 제40조 및 영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4항 본문 중 “법 제21조 또는 제22조”를 “법 제45조 또는 제4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법 제14조제1항제3호”를 “법 제34조제1항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법 제21조”를 “법 제45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20조”를 “법 제43조”로, “법 제21조 또는 제22조”를 “법 제45조 또는 제46조”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2조”를 “법 제15조”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규칙 제10조”를 “영 제12조”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영 제5조”를 “영 제6조”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구조·지도·계몽”을 “지도·계몽”으로,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영 제15조”를 “영 제28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명예감시원”을 “명예동물보호관”으로 한다.

제24조 중 “경비를”을 “물품 및 경비 등을”로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하고 입양동물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기동물 입양 홍보 및 캠페인
2. 유기동물 입양자에 대한 교육
3. 유기동물 입양비(의료비, 보험료, 동물등록비 등) 및 양육물품(사료, 간식, 목줄, 배변패드 등) 지원
4. 그 밖에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대상, 지원기준, 지원품목, 지원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동물보호법」(이하 “법” <u>이라한다</u>)에서 위임된 사항과 반려동물과 유실·유기동물의 보호와 학대방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사람과 반려동물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and 동물의 생명존중의식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이라 한다</u>)----- ----- ----- -----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실·유기동물”(이하 “유기동물” <u>이라한다</u>)이란 도로·공원 등의 공공장소에서 소유자 등이 없이 배회하거나 사람으로부터 내버려진 동물을 말한다.	2. ----- ----- <u>이라 한다</u>)----- ----- ----- -----.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5. “보호조치”란 <u>유실·유기동물</u> 등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을	5. ----- <u>유기동물</u> -----

공급하고, 운동·휴식 및 수면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 동물이 본래의 습성을 유지하며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보호·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동물보호센터”란 목포시(이하 “시”라 한다)가 유기동물 보호를 위하여 법 제15조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7. (생략)

8. “등록대상동물”이란 동물의 보호, 유실·유기방지, 질병의 관리, 공중위생상의 위해 방지 등을 위하여 등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영 제3조에서 정하는 동물을 말한다.

9. ~ 11. (생략)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 ③ (생략)

④ 소유자 등은 영 제3조에 해당하는 동물을 등록해야 하며 외출시 안전조치 등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6. -----

----- 법 제35조 -----

-----.

7. (현행과 같음)

8. -----

----- 영 제4조 -----
-----.

9. ~ 11. (현행과 같음)

제5조(소유자 등의 의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영 제4조 -----

-----.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시장은 반려·유기동물 보호와 학대방지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신 설>

1. ~ 5. (생략)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생략)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 3. (생략)

4. 영 제5조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 중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만료로 종료한다.

<신 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

----- 위하여 -----

----- 수립·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행계획에는 시민의 성별, 연령 및 반려동물 양육 특성 등을 고려한 사항이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 5.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1. ~ 3. (현행과 같음)

4. 영 제6조-----

<삭 제>

⑤ 위원회는 안전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제7조 각 호의 사항과 관련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은 유실·유기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수행함에 있어 동물보호센터를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거나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을 수 있는 동물보호센터는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기관·단체·개인 등으로 한다.

③ ~ ⑥ (생략)

제13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 취소) ① 시장은 지정한 동물보호센터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보호시설의 지정기준 준수여부와 보호·관리 중인 유기동물의 건강과 보호·관리 상태를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라 연 2회 이상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법 제15조

한 안전에 대한 심의·의결 종료 후 자동 해산한다.

제12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 유기동물-----

법 제35조제1항-----

----- 법 제36조제1항-----

② -----

----- 「동

물보호법 시행규칙」(이하 “규칙”

이라 한다) 제16조-----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동물보호센터 점검 및 지정 취소) ① -----

----- 규칙 제

16조 및 제20조-----

② ----- 법 제36

제7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견된
경우, 시정명령 또는 지정취소 등
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유기동물 또는 피학대
동물을 발견하거나 신고를 받은
때에는 법 제14조에 따라 구조·
보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③ (생략)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점검 결과 보호·관리 상태가 적
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에는 법 제39조제1항제3호에 따
른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호동물의 공고) 시장은 제
14조제1항에 따라 유기동물을 구
조하여 보호조치한 때에는 법 제17조
및 영 제7조제1항에 따라 동물보
호 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조제4항-----

-----.

제14조(동물의 구조·보호 및 관리)

① -----

----- 법 제34조-----

-----.

②·③ (현행과 같음)

④ -----

----- 법 제86조제1항

제3호-----

-----.

제15조(보호동물의 공고) -----

법 제40조 및 영 제16조제1항-----

-----.

제16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 ③ (생략)

④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공고한 날부터 10일이 지나도 보호동물의 소유자 등이 나타나지 않거나 동물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분양·기증 또는 인도적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다만, 분양 또는 기증을 하는 경우에는 중성화 수술을 동의하는 사람에게 우선하여 분양하며, 중성화 수술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⑤·⑥ (생략)

제17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시장은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동물을 구조하여 소유자로부터 격리하여 보호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구조한 동물을 동물보호센터에 보호조치를 하되, 영 제5조에 따른 단체가 보호조치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그 단체에서 보호조치를 하도록

제16조(유기동물의 반환 및 처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법 제45조 또는 제46조 -----

-----.

⑤·⑥ (현행과 같음)

제17조(피학대동물 보호 및 관리) ①

----- 법 제34조제1항제3호 -----

-----.

② -----

-----, 영 제6조 -----

하고,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된 동물을 법 제21조에 따라 처리하고자 할 경우 보호조치 중인 단체에 우선적으로 분양할 수 있다.

③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이 시장에게 귀속된 경우 해당 동물을 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기증 또는 분양을 하는 경우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19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①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법 제12조에 따라 시장에게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하 “등록대행자”라 한다)을 지정한 경우 소유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된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 ⑤ (생략)

제20조(등록대행자 지정·관리) ①

----- 법 제45조 -----

-----.

③ 법 제43조 -----

----- 법 제45조 또는 제46조 -----

-----.

제19조(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① ----- 법 제15조 -----
-----.

-----.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0조(등록대행자 지정·관리) ①

시장은 규칙 제10조에 해당하는 사람 중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디지털카메라, 무선식별장치 리더기 등을 갖추고 등록대행 업무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

② ~ ④ (생략)

제22조(길고양이 관리 등) ①·② (생략)

③ 시장은 길고양이의 개체 수 조절을 위해 동물병원 등을 지정하여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포획·방사 사업은 영 제5조에 따른 동물보호단체, 민간사업자 등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동물보호명예감시원) ① 시장은 동물학대 방지와 동물보호를 위한 구조·지도·계몽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명예감시원(이하 “명예감시원”이라 한다)을 위촉·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 영 제12조-----

-----.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2조(길고양이 관리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영 제6조-----

-----.

제23조(명예동물보호관) ① -----

----- 지도·계몽 -----
----- 법 제90조제1항에 따라 명예동물보호관-----

-----.

② ----- 명예동물보호

자격, 위촉, 해촉, 직무, 활동범위,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15조에 따른다.

③ 명예감시원은 제2항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부정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동물보호 비용의 지원) 시장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의 보호 조치와 동물의 생명보호, 유기동물 발생 예방, 동물복지증진 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 설>

관-----

----- 영 제28조-----.

③ 명예동물보호관-----

제24조(동물보호 비용의 지원) ----

--- 물품 및 경비 등을 -----.

제24조의2(유기동물 입양 활성화) ①

시장은 유기동물의 입양을 활성화 하고 입양동물의 안정적인 정착과 복지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유기동물 입양 홍보 및 캠페인
2. 유기동물 입양자에 대한 교육
3. 유기동물 입양비(의료비, 보험

료, 동물등록비 등) 및 양육물품
(사료, 간식, 목줄, 배변패드
등) 지원

4. 그 밖에 유기동물의 입양 활성화
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
대상, 지원기준, 지원품목, 지원방
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48 호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목포시 분뇨수집·운반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분뇨수집·운반 수수료 산정기준)의 개정 규정은 2026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분뇨수집 · 운반 수수료 산정기준
(안 제4조 및 제5조)

부 과 대 상	부과기준	수집 · 운반 수수료	시행시기
· 수거식 화장실 · 개인하수처리시설	L(리터)당	22원	2026. 12. 1.~
		24원	2028. 1. 1.~

※ “수집 · 운반”은 분뇨의 수집(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의 청소를 포함한다)
· 운반을 말한다.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49 호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운영을 원활히 하고, 그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이해와 주민복지를 증진하여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하수”란 「하수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공공하수처리시설”이란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하수처리시설과 이를 보완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주변지역”이란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행정 통을 말한다. 다만,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에서 환경상 영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인근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로서 신설 및 증설로 인해 1일 500톤 이상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변지역 지원계획 수립 등) ①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목포시 주변지역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지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변지역의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주변지역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주변지역 주민의 인구, 세대수 및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다른 주변지역 지원현황과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5조(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 시장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 또는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재원의 조달) 제5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재원은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 전입금을 통해 조달한다.

제7조(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목포시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주변지역 지원사업의 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지원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하수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목포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 공공하수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 대표(주변지역의 통장으로 한정한다)

3. 그 밖에 하수 및 환경에 전문적인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를 1명으로 두고, 간사는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증설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9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선정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위원장 직무)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고 위원장이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목포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르고, 그 외의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50 호

목포시 자연재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및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고의 부담 및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지원금”이란 목포시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사망하거나 실종된 사람, 부상을 당한 사람, 주택이나 농업·어업·임업·소금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자 및 사업장에 재해를 입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소상공인”이라 한다) 및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하“중소기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말한다.

2. “지원기준지수”란 재난지원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지원항목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지원율을 곱하여 1천으로 나눈 값을 말한다.

3. “재난지수”란 지원기준지수에 피해물량을 곱하여 산정한 값과 영 제4조제1항제1호의 지원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한 값을 말한다.

4. “재난등급”이란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지수를 기준으로 재난의 정도를 등급화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법 제3조제1호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에 적용한다.

② 법 제3조제1호가목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기상 예비특보 발령 상황에서 발생하는 피해

2. 기상특보 발령은 내리지 아니하였으나 강우량, 풍속 등이 특보발령 기준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피해

3. 기상특보 발령이 없는 상황에서 낙뢰 등의 현상으로 인한 피해

4. 그 밖에 중앙 또는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재난으로 결정한 경우

제4조(지원대상) 목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영 제5조에 따른 국고지원에서 제외된 재난의 사유시설 피해와 재난지수가 100 이상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기준) 제4조에 따른 지원기준은 영 제9조제1항을 준용하며 가구당 재난지수가 100 이상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에 대하여는 재난지수당 1,000 원을 곱하여 산정된 금액을 지원한다.

제6조(재해발생사실의 신고 등) ① 제5조에 따라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재난이 종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난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해당 동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영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동장은 신고 내용을 기초로 지체 없이 피해 사실을 조사하고, 목포시 담당부서의 확인을 거친 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재난지원금의 지급) ① 시장은 제6조제3항에 따라 동장으로부터 피해 사실 조사결과가 제출되면 이를 확정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즉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재난지원금의 반환) ① 시장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재난지원금을 돌려받아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재난지원금을 받은 후 그 지급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된 경우
3. 행정 착오 등으로 인하여 재난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반환의무자가 재난지원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반환하지 아니하면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목포시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10월 12일

목 포 시 장 강 성 회

목포시 조례 제 4050 호

목포시 버스 공영차고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목포시 버스 공영차고지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차고지”란 목포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차고지를 말한다.
2. “공영차고지”는 주차장 및 부속 건물(관리동, 정비동, 세차동 등)과 전기 충전 관련 시설물 등을 포함한다.
3. “사용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영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자로서, 목포시 공영버스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운송사업자

나. 전기 충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하는 자(이하 “충전 시설 업체”라 한다.)
다. 그 밖에 차고지 내 부대시설 운영, 편의시설 설치·운영 등의 사유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 공영차고지를 사용하는 개인 또는 법인

4. “감독자”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공영차고지 전반의 실질적인
관리·점검·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목포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를
말하며, 목포시 직영버스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직영공영팀 소속
공무원을 포함한다.

5. “공동사용구역”이란 공영차고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개사 이상
 (“감독자” 포함)이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시장이 지정한 구역으로서,
세차시설, 출입로, 회차로, 공동 휴게시설, 식당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공영차고지의 위치 및 명칭) 공영차고지는 목포시 죽교동 701번지 일원
에 두고 “목포시 북항 버스 공영차고지”(이하 차고지)라고 한다.

제4조(차고지 사용허가) ① 시장은 운송사업자 및 연료공급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는 자에게 차고지 및 시설물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사용허가 기간을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③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차고지의 사용허가 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④ 목포시의 버스노선체계 이행, 버스운영 지원 등을 위해 공영차고지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차고지 및 시설물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⑤ 차고지 및 부속 시설의 운영·관리·이용에 관한 모든 결정 권한은 시장에게

있으며, “사용자”는 차고지 및 시설 사용에 있어 시장이 정하는 기준·방침·지시 및 결정 사항을 따라야 한다.

제5조(사용료 등) 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차고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공용면적 포함)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따라 산출된 재산평정 가격(토지는 개별공시지가, 건물은 감정가격)의 1천분의 25를 부과·징수한다.

② 공동으로 이용하는 차고지 및 시설물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공과금(전기, 수도, 가스 등) 및 시설 유지관리비(무인경비료, 폐기물 처리비 등)는 시설을 실제 이용하는 감독자를 포함한 사용자가 공동 부담한다. 다만 비용 부담 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③ 시장은 사용자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재난으로 공영차고지를 일정 기간 사용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사용하지 못한 기간의 사용료와 그 이자를 일할 계산하여 감경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이외에 사용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6조(사용료의 납부 등) ① 제5조에 따른 사용료는 선납으로 전액 납부하여야 하며, 사용료의 납부기한은 사용허가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년 이상일 경우에는 매년 당초 사용개시일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료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체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연 7퍼센트
2. 연체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8퍼센트
3. 연체기간이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 연 9퍼센트

4. 연체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연 10퍼센트

제7조(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차고지 및 차고지에 설치된 시설(이하 “사용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시설 등의 파손, 장애 또는 그 위험이 있는 상태를 발견하는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용시설 등을 파손 또는 훼손하는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즉시 시장에게 변상하거나 사용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시장이 정하여 통지한 ‘사용자별 사용구역’(휴게 공간, 주차면, 정비 구역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신에게 배정되지 아니한 구역 또는 시설을 점유·사용·침범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공동 사용 구역”은 상호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평성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을 마친 경우에는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원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⑤ “공동 사용 구역”의 효율적 이용과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용구역의 사용순서, 사용방법 등을 정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사용자의 행위제한) 사용자는 차고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1.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하는 행위
2. 차고지 및 사용시설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 행위 (다만, 「공유재산 및 물품 관

리법」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다른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

3. 환경관련법(「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이상의 악취·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는 행위

4.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기본법」 등에서 금지한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행위

5. 제7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6. 그 밖에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제한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사용허가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시장이 공공목적의 필요에 의하여 시설의 용도를 변경하고 사용허가 된 목적을 회수하는 경우

3. 사용료를 6개월 이상 연체하였을 경우

4.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자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5.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6. 시장의 승인 없이 사용을 허가받은 자가 공영차고지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7. 관련 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하여 시장이 지시하는 명령 또는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기 6개월 전에 사용자 또는 충전시설 업체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운영지원) 위탁운영을 할 때에는 그 소요경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

에서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감독자 또는 전문가에 의뢰하여 시설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수시 조사하게 하거나 그 장부 또는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 결과에 대하여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이에 적극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손해배상 등) 사용자 또는 위탁자의 잘못으로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목포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목포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